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 시험에서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금지〉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402호)

2023.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규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동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3. 9. 12.
3. 회부연월일 : 2023. 9.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경쟁 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의 경우 공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가 공고 없이 진행된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가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단서).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쟁채용(이하 ‘비다수인 경쟁채용’이라 한다)에서 지방직공무원을 국가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신규채용) ① (생략)	제28조(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u>제7호</u> ,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	② ----- ----- ----- ----- ----- ----- ----- ----- ----- ----- ----- ----- ----- ----- ----- ----- ----- <u>제7호(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u> ----- ----- ----- ----- -----

현행	개정안
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인 ‘경력경쟁채용시험(제28조제2항 본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제28조제2항 단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¹⁾.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²⁾, 경쟁이 제한되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위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게 되면 일반적인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 인사교류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인사교류의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 2) 국가공무원은 신분보장 등의 유무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며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행정, 기술·연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관·검사·경찰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됨.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국가와 지방 간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행정의 효율을 저해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1